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값 업데이트	환매수수 료 삭제	자본 시장법	신용평 가등급
1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	-
2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	-
3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 합-재간접형)	○	-	-	-	-
4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5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6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7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슛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 식혼합)	○	○	-	-	-
8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	-	-	○	-
9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	-	-	-
1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혼합)	○	○	-	-	-
11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	○	○
12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주식)	○	○	-	-	-
13	미래에셋엠브렐라증권투자신탁(채권)	○	○	-	○	○
14	미래에셋우리아이글로벌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재간접형)	○	-	-	-	-
15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	-	○	-
16	미래에셋인텍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	○	-	-	-
17	미래에셋인텍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	-
18	미래에셋인텍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	-
19	미래에셋인텍스로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	-
20	미래에셋인텍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 파생재간접형)	○	○	-	-	-
21	미래에셋인텍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	-
22	미래에셋인텍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 생재간접형)	○	○	-	-	-
23	미래에셋인텍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	○	-	-	-
24	미래에셋인텍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	○	-	-	-
25	미래에셋인텍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	○	-	-	-

26	미래에셋참산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27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28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29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30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31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환매수수료 삭제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년 06월 16일(금)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16.54	15.46	2	2
미래에셋e-오션브릭스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1.47	20.8	2	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3	3	5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41	4.39	5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3.58	3.41	5	5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11.01	9.68	3	4
미래에셋엠브렐라증권투자신탁(채권)	2.43	2.62	5	5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10.24	9.57	3	4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14.9	14.07	3	3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투자자신탁(주식)	31.03	30.88	1	1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투자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09	11.85	3	3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투자자신탁(주식)	31.77	31.75	1	1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투자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49.11	47.29	1	1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투자자신탁(주식)	23.12	21.68	2	2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3.79	21.41	1	1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11.62	11.49	3	3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12.02	11.96	3	3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8.69	8.09	4	4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자신탁1호(주식)	14.79	13.94	3	3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5	4.94	5	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혼합)	5.53	5.28	4	4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4.88	4.67	5	5

3)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p><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자신탁1호(채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주식)> •종류A: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A 외: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	------

<p>제41조(환매 수수료)</p>	<p><u><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1호(채권)></u> <u>30일 미만: 이익금의 70%</u> <u>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u></p> <p><u><미래에셋그린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u> •종류A: <u>30일미만: 이익금의 70%</u> <u>90일미만: 이익금의 30%</u> •종류A 외: <u>90일미만: 이익금의 70%</u></p>	<p><u>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p>
---------------------	---	--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제2부. 8.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¹</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p>

¹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예의 투자>²</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제5부. 1.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사항</p>	<p><신설></p>	<p>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제5부. 3. 가.</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p>	<p>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p>

²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p>	<p>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p>
<p>제5부. 3. 나. 수시공시 / (1)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p>	<p><신설></p>	<p>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제5부. 3. 나. 수시공시 / (2)수시공시</p>	<p>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p>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p>제5부. 3. 나. 수시공시 /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p>	<p>☞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p>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³	<p>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2.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제19조(운용)	<p>4.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p>	<p>4.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p>

³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해당됨.

<p>및 투자 제한)⁵</p>	<p>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① ~ ③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p>

⁵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니하다.	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금전 차입 등의 제한)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⑥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8.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

투자대상 < 채권>⁶	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제2부.8.가. 투자대상 <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⁷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⁸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⁶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⁷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⁸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

	<p>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⁹</p>	<p><신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미래에셋자산운용(주)

⁹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